

## 【 18 】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건축물 입지 규제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

발의년월일 : 2000. 9. 8

발 의 자 : 김완수의원외 2인

### □ 제안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공포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별첨”

##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건축물 입지규제 완화 건의문

국토의 균형개발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국민의 평화로운 생활 환경을 확보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정책 수립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건설교통부 장관님께 우리 양주군 의회 의원들은 11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주군은 1971년 7월 아래 군 전체 면적 309.86㎢의 26%인 79.02㎢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개발제한 구역의 80%인 63.52㎢는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북한산 국립공원구역, 수질보전지역등과 중복 지정되어 이중, 삼중의 관계법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곳에 현지 주민들은 30여년간 생활의 불편과 고통은 물론 건축행위규제, 재산권행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국가정책에 순응하면서 고통을 참고 오늘날까지 살아 왔습니다.

지난 7월 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 시행되면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주택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개축할 수 없는 주택 등에

대하여 1만제곱미터당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어 지정된 취락지구내로만 이축을 허용하여 종전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인근 토지, 인근마을, 인근읍·면으로 이축할 수 있는 조건과 비교할 때 규제가 완화된 것이 아니라 강화가 되어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엄청나게 높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종전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축 조건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우리 관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은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GB 해제·조정 제도에 대하여 희망과 기대감으로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추이를 주시하는 가운데 위와 같이 찬물을 끼얹는 새로운 이축 규제로 향후 건축행위 및 재산권의 제한은 더욱 심하게 되어 GB 관련 정책의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2. 또한 우리군 장흥면 송추 유원지는 1985년 북한산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자연공원법의 중첩 규제를 받아온 지역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 서부지소에서 동 지역의 주차장 및 소공원설치 목적으로 14가구에 대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금년 3월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이축을 종용하고 있으나 역시 위와 같은 이축규제로 이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 시행 이전에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축 대상으로 결정된 가구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인정하는 법의 경과규정이 없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면서 법적 안정성 및 신뢰성을 보호하는

입법의 기본 원칙을 간과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주민의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해아려 종전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축 조건으로 관계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0년 9월 9일

## 양 주 군 의 회 의 원 일 동